



: 2019-10-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221389 권리금반환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김광덕, 강동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진수
변 론 종 결 2019. 7. 23.
판 결 선 고 2019.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9.경 C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건물 E동(이하 'D 건물'이라 한다) 제2층 F호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면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접하고,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식당의 포스(POS)기에 입력되어 있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월별 매출 조회 자료(이하 '월별 매출 조회 자료'라고만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내역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

	총 합계(원)	카드(원)	현금(원)	할인합계(원)
2016. 7.	26,828,900	24,677,000	2,151,102	0
2016. 8.	25,774,620	23,951,720	1,818,420	4,400
2016. 9.	17,115,630	15,830,450	1,229,900	1,550
2016. 10.	28,139,700	21,809,400	1,523,800	7,500
2016. 11.	30,857,100	29,240,000	1,647,100	0
2016. 12.	35,844,600	33,981,220	1,863,400	13,530
2017. 1.	35,210,600	34,230,800	989,100	0
2017. 2.	41,068,600	40,002,720	1,265,902	0
2017. 3.	41,240,620	40,156,520	1,073,702	12,400
2017. 4.	34,597,700	33,949,400	847,500	820
2017. 5.	34,599,100	31,548,320	3,047,640	5,160
2017. 6.	28,777,900	25,569,020	3,189,900	0
월 평균매출	31,671,255	29,578,880	1,720,622	3,780

다. 원고는 위 월별 매출 조회 자료와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할 당



시 C에게서 교부 받은 매장정보보고서 상 매출자료(2015. 7.부터 2016. 6.까지 월 평균 매출 34,659,117원)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되, 권리금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한 1억 원 보다 낮은 6000만 원으로 하고, 식자재 외상매입금 채무 500만 원 상당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여, 2017. 7.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00만 원, 2017. 7. 10. 잔금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3. 이 사건 식당 점포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7. 11.부터 2021. 7. 10.까지 48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7. 7. 10.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가공매출을 포스기에 기록하여 허위의 월별 매출 조회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6000만 원과 원고가 인수한 식자재 외상매입금 채무 500만 원의 합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가 가공매출을 기록하여 허위의 월별 매출 조회 자료를 알려주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 15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월별 매출 조회 자료 산정의 근거가 된 거래내역 중 2017. 4.부터 6.까지의 거래내역 영수증을 보면, 영업시간 11:00부터 21:00까지 중 마감 시간대(20:00 이후)에 집중적으로 '가판(가승인)' 형식의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가승인 거래내역이 월별 매출 조회 결과에서 보는 전체 매출액 중 20% 내외를 차지한다(2017. 4. 전체 매출액 34,597,000원 중 8,932,900원, 2017. 5. 전체 매출액 34,599,100원 중 9,912,400원, 2017. 6. 전체 매출액 28,777,900원 중 8,932,900원).

2) 피고는 2017. 5. 17. 포스기 회사에 실제 판매금액이 기재된 KOCES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를 조회 및 발급받았고(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이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2017. 5.분은 같은 달 10.까지의 매출이다).

	신용_계		현금		매출총액(원)
	매출건수	매출금액(원)	매출건수	매출금액(원)	
2016. 8.	1,060	20,000,820	34	653,500	20,654,320
2016. 9.	820	15,890,450	29	586,200	16,476,650
2016. 10.	1,021	20,266,200	19	438,600	20,704,800
2016. 11.	845	17,024,200	26	531,200	17,555,400
2016. 12.	1,114	21,823,700	30	628,100	22,451,800
2017. 1.	1,216	24,561,000	20	430,400	24,991,400
2017. 2.	1,325	27,588,500	28	599,000	28,187,500
2017. 3.	1,273	28,153,300	36	911,001	29,064,301
2017. 4.	1,065	23,444,600	18	420,800	23,865,400
2017. 5.	514	11,636,000	13	412,900	12,048,900

3)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부터 원고에게 제공한 월별



매출 조회 결과에 가승인된 매출이 포함되었던 이유는, '① 5만 원 이상 식사를 해야 무료 주차권이 나오는 D 건물의 정책 때문에 손님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과, ② 카드매출이 많다 보면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음식대금을 10% 할인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포스기 매출을 삭제하고 현금계산 된 부분을 영업 마감시간에 정산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담당검사는 2018. 1. 29. '피고가 포스기 매출조회 자료에 가승인한 행위를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매출전표를 만들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월별 매출 조회 자료 외에 KOCES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가 2017. 5. 17. KOCES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권리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I, J,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1)항의 2017. 4.부터 6.까지의 거래내역 영수증을 보면, 가승인된 거래내역의 세부내역은 대부분 5만 원 미만이고 가승인은 대부분 영업 마감 시간대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무료 주차권 발급을 위한 가승인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사기', '작업', '형사고발' 등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월별 매출 조회 자료가 조작되었음을 전제로 D 건물에서 인근 식당을 운영하던 I과 대화하였는데, I은 당시 피고가 권리금계약을 위해서 포스기 매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말하였다고 한 점, ③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와 함께 밤 시간대(17:00부터 21:00까지)에 약 3개월간 근무한 직원인 J은 피고로부터 현금 고객에게 10% 할인을 해주라는 지시를 받거나 현금 결제



내용을 쪽지에 적어 피고에게 준 사실이 없고, 무료 주차권 제공과 관련한 가승인 업무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와 함께 평일 또는 주말 중 일 근무를 했던 L은 피고로부터 현금고객에 대한 10%의 할인과 무료 주차권 제공과 관련된 가승인 업무를 지시받아 담당했다고 증언하였으나 포스기에 가승인 입력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자세히 밝히지 못한 점, ⑤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와 함께 평일 또는 주말 파트타임 근무를 했던 K은 피고로부터 현금고객에 대한 10%의 할인과 무료 주차권 제공과 관련된 가승인 업무를 지시받아 담당했다고 증언하면서 현금 결제의 경우 포스기에 일단 입력된 매출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은 쪽지에 적었다가 피고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나, 포스기에 일단 주문된 메뉴를 입력하면 포스기 시스템상 가승인되어 이후 삭제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가공매출을 포스기에 기록하여 원고에게 허위의 월별 매출 조회 자료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인지 여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월별 매출 조회 자료와 피고가 C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당시의 매출 자료까지 살펴본 뒤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것이고, 위 매출액에 대한 자료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편재된 상황에서 피고가 매출액을 부풀려 포스기에 허위로 입력하고 원고에게 허위의 매



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액을 고지함으로써 실제 매출보다 많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고지한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2017. 5. 17. 포스기 회사에 실제 판매금액이 기재된 KOCES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를 조회 및 발급받았고, 피고가 C으로부터 교부 받은 매출 자료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월별 매출 조회 자료의 매출액이 유사한 데 비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한 권리금 액수보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권리금 액수가 약 30% 정도 낮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주장대로 KOCES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를 원고에게 제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 받은 월별 매출 자료가 정확하다고 믿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나의 판단자료로 작용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조작한 가공 매출액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20% 정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실에 부합한 월별 매출 자료를 제시받았더라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허위 월별 매출 조회 자료 교부에 속아 피고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2018. 7. 27.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무렵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취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권리금 6000만 원과 원고가 인수한 식자재 외상매입금 채무 500만



: 2019-10-24

원의 합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7. 28. 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 중 2019. 6.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아